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
----------	----

제출일자 : 2008. 3. 1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2007.9.1)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와의 혼동방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칭변경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당해 ⇒ 해당, 월 ⇒ 개월,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라/따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8. 1. 24 ~ 2. 13(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총칭한다.
2. “민간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취미 동호회 등 주민이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해당 동명 뒤에 “주민자치회” 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봉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 지역문화 예술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선용기능
-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복지기능
-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회에서 제6조제1항의 시설등 운영(이하 “자치회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운영을 수탁한 자나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안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운영 일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회운영에 따른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으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으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 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회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문화계·예술계·경제계·공무원·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학식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지체 없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 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회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0조제3항·제5항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용료	다목적 프로그램실 이용	1회 (2시간)	10,000원 ※ 냉·난방기 사용시 기준 금액의 50% 가산	
	시설·장비 활용 프로그램 이용	1회 (1시간)	청소년 500원	※ 1개월 단위로 15,000원 초과할 수 없음
일반인 1,000원				
수강료	강사·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	1명 1회 (1시간)	청소년 1,000원	※ 1개월 단위로 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 20,000원 (청소년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
			일반인 2,000원	
기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비율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감면비율 50%